

##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3
------------	-----

제안년월일 : 2007년 11월 30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07. 5.11)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 개정(2007.10. 4)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관계법규 인용조문 변경

-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제41조로, 동법시행령 제19조의2를 제52조로 변경함(안 제1조)
- 법 제104조 내지 제105조를 제113조 내지 제115조로, 제112조를 제121조로, 제137조를 제146조로, 제95조제2항을 제104조제2항으로 변경함(안 제5조)
- 법 제36조제3항을 제41조제3항으로 변경함(안 제6조, 안 제12조)
- 법 제36조제5항 및 영 제17조의4제4항을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 제4항으로 변경함(안 제10조)
- 법 제37조제2항을 제42조제2항으로 변경함(안 제13조)
- 제15조를 제16조로, 제16조를 제17조로 변경함(안 제20조)
-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제41조제5항으로, 제36조를 제41조로, 동법시행령 제17조의4를 제43조로 변경함(안 별표1)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5. 관계법령발췌 : 별첨

-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제104조, 제113조~제115조, 제121조, 제146조
-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2조

##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6조”를 “제41조”로, “제19조의2”를 “제52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104조 내지 제105조”를 “제113조 내지 제115조”로 하고, 제3호중 “제112조”를 “제121조”로 하고, 제4호중 “제137조”를 “제146조”로 하며 제5호중 “제95조제2항”을 “제104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중 “제36조제3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6조제5항”을 “제41조제5항”으로, “제17조의4제4항”을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36조제3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37조제2항”을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제15조”를 “제16조”로,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별표]1 가.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 중 “제36조제5항”을 “제41조제5항”으로 하고 나. 피감사(조사) 공무원 선서서 중 “제36조”를 “제41조”로, “제17조의4”를 “제43조”로 하며 다.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서 중 “제36조”를 “제41조”로, “제17조의4”를 “제43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41조 ..... 제52조 ..... ..... ..... ..... ..... ..... .....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생략) 1. (생략) 2. 법 제104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충청북도조례로 설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 사업소 3.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의회에의 보고로 같음하되,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4. 충청북도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5.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생략) ② (생략)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제113조 내지 제115조 ..... ..... ..... 3. ... 제121조 ..... ..... ..... ..... ..... ..... 4. ..... 제146조 ..... ..... 5. ... 제104조제2항 ..... ..... ..... ..... .....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관계 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1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 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제5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